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82

발의연월일: 2025. 5. 12.

발 의 자: 박수현 · 윤종오 · 이개호

임오경 · 조계원 · 윤준병

이정문 · 김재원 · 황운하

조인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지원 등을 위하여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등으로 조성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기금의 목표액을 매년 1천억 원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금의 목표액과 관련하여, 법률 개정 당시 부칙으로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여 기금의 총 목표액을 1조원으로 설정한 바 있음.

그런데 2024년 기준 기금 조성액의 목표 달성률이 26%에 불과한 실정으로 현재 추세에 따르면 2026년 예상 기금액이 당초 목표액인 1 조 원에 턱없이 부족한 3,2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금액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기금 조달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기금 조성액 목표에 관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조성과 운용을 통하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법률 제1452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정부 외"를 "정부 또는 정부 외"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필요한"을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0분의 5를 기준으로 한다) 지원을 포함하여 필요한"으로 한다.

법률 제1452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10년간"을 "20년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설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 ③ -----정부 또는 정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 의 재산 등으로 조성한다. ④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원으로 하고, 상생기 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 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 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 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0분의 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를 기준으로 한다) 지원을 포 함하여 필요한-----⑤ · ⑥ (생략) (5)·(6) (현행과 같음) 법률 제14528호 자유무역협정 법률 제1452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18조의2제4항 제2조(유효기간) ------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u>10년간</u> 효력을 가진다.	<u> 20년 간</u>